

2000. 2. 26(토)

제57회 임시회 제4차본회의

제천시용역과제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심사보고서

總務委員會

제천시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심사보고서

1. 심사경과

-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당초안) : 2000. 2. 16. 제천시장
- 나. 당초안 상정일자 : 2000. 2. 23.
- 다. 수정안 상정일자 : 2000. 2. 23.(제57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제1차회의)

2. 제안설명요지

가. 제안이유(개정안)

- 제천시용역과제 심의위원회 위원을 보강하는 한편, 용역과제 심의 내용을 일부 조정하고자 하는 것임.

나. 수정이유

- 동 개정조례안 제4조의 “규칙에서 정하는 일정금액 이상의” 삽입문구가 본 조례제정 목적인 외주발주에 따른 예산낭비를 막고 건전한 재정 운영을 위한 기본 취지에 어긋나는 바, 이를 삭제하고자 함.

다. 주요내용(개정안)

- 동 조례 제3조 제3항(구성)의 당연직위원에 기획담당관을 추가.

- 동 조례 제4조의 심의대상 용역과제중 공사설계용역은 규칙에서 정하는 일정금액 이상분만 심의하는 것으로 확정.
- 동 조례 제7조의 간사를 기획담당관에서 건설기획담당으로 하고, 서기는 폐지.

라. 수정주요골자

- 개정안 제4조중 “규칙에서 정하는 일정금액이상의” 문구를 삭제.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신태훈)

○ 법적 검토

- 동 조례는 '99. 10. 22일 제53회 임시회시 의원발의로 자체적으로 성립된 조례로써 법규적 저촉사항은 없음.

○ 행정적 검토

- 동 조례의 제정이후 시행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을 보완코자하는 것으로 당연직위원에 기획담당관을 추가하는 것과, 간사인 기획담당관을 건설기획담당으로 하며, 서기를 삭제하는 것은 실효성있는 심의를 위하여 타당하다 할 것이며,
- 개정 조례 제4조(기능)의 심의과제중 “규칙에서 정하는 일정금액 이상의 공사설계 용역등의”로 개정하고자함은 공사금액이 천차만별인 현실상황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것이라 이해됨.

4. 질의 답변 요지

가. 질의요지

1) 안 제4조의 “규칙에서 정하는 일정금액이상”의 범위는?

(조병석 위원)

2) 몇 몇 소규모사업비등에서 외주설계용역을 주는등 임의대로 용역 설계를 하는 부작용이 있는데 ?

(박태덕 위원)

3) 본 조례 운영상 효과 및 부작용은 ?

(유영화 위원)

나. 답변요지 (예산담당 강덕구)

1) 현재 정해진 바는 없으나, 대략 설계용역비 금액을 5천만원이상으로 할 계획임.

2) 대략 봄에 집중적으로 설계물량이 나오다 보니 인원적인 제한등으로 인해 부득이 금액이 소액인 경우에도 외주용역발주하는 경우가 있음.

3) 학술용역관계는 성과가 좋은 편이었고, 공사설계 용역관계는 사업추진상에 어려움이 있어 제도적인 모순을 개선하고자 부득이 일정금액이상으로 제한하는 개정안을 제출하게 되었음.

5. 수정안 심사내용

① 박태덕 위원의 수정안 발의

○ 발의 사유

개정안 제4조중 “규칙에서 정하는 일정금액 이상의” 문구를 삭제하여 본 조례제정 목적인 예산절감, 건전 재정 유지를 위한 용역과제 심의대상의 폭을 현행대로 유지하여야 함.

○ 수정발의내용

안 제4조중 “규칙에서 정하는 일정금액이상의” 문구를 삭제.

② 총무위위원 2인의 제청.

6. 심사결과

“수정안가결” (표결처리 : 찬성 4, 반대 1, 기권 1)

7. 심사보고 불임서류

제천시용역과제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1부.

제천시용역과제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 1부. 끝.

2000. 2. 23(수)
제57회 임시회 제1차총무위

제천시용역과제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에대한 수정동의안

總務委員會

제천시용역과제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1. 수정사유

개정조례안 제4조의 “규칙에서 정하는 일정금액이상의” 문구가 본 조
례제정 목적인 무분별한 외주발주용역에 따른 예산낭비를 막고자 하는
취지에 어긋나는 바, 이를 삭제하고자 함.

2. 수정주요골자

- . 안 제4조중 “규칙에서 정하는 일정금액이상의” 문구를 삭제.

3. 관련 법령

없음.

제천시용역과제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제천시용역과제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중 다음과 같이 수정 한다.

안 제4조(기능)중 “위원회는 사업집행용역을 제외한 학술 및 연구용역과 종합기술용역 및 규칙에서 정하는 일정금액이상의 공사설계용역등의”를 “위원회는 사업집행용역을 제외한 학술 및 연구용역과 종합기술용역 및 공사설계용역등의”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수정안 대비표

현행	개정안	수정안
제3조(구성) ① ~ ② (생략) ③ 위원회의 당연직위원은 총무사 회국장, 산업건설국장이 되고, 위촉위원은 시의회의원 2명, 전문가, 그리고 각종 용역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제3조(구성)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 산업건설국장, 기획담당관이 되고 ··· ··· ··· ··· ···	제3조(구성)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 산업건설국장, 기획담당관이 되고 ··· ··· ··· ··· ···
제4조(기능) 위원회는 사업집행용역을 제외한 학술 및 연구용역과 종합기술용역 및 공사설계용역등의 과제선정과 관련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제4조(기능) 위원회는 사업집행용역을 제외한 학술 및 연구용역과 종합기술용역 및 규칙에서 정하는 일정금액 이상의 공사설계용역등의 ··· ···	제4조(기능) 위원회는 사업집행용역을 제외한 학술 및 연구용역과 종합기술용역 및 공사설계용역등의 ··· ···
제7조(간사등)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인을 둔다. ② 간사는 기획담당관이 되며, 서기는 예산담당이 된다.	제7조(간사등) ① ······ 간사 1인을 둔다. ② 간사는 건설기획담당이 된다.	제7조(간사등) ① ······ 간사 1인을 둔다. ② 간사는 건설기획담당이 된다.